

허가번호 제 2018-46호

멸종위기
야생생물

[]포획 []채취 []방사 []이식 []가공
[]유통 [✓]보관 []수출 []수입 []반출
[]반입 []훼손 []고사

허가증

| |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---------|
| 성명(대표자) | 송천현 | 생년월일 | 1956.11.05 | |
| 상 호(명 칭) | 서울대공원 | 전 화 | 02-500-7713 | |
| 주 소 |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 광장로 102, 서울대공원 | | | |
| 허가 사항 | 대 상 지 역 | 인계 : 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(금강유역환경청 반출 허가 제2018-39호) 보관 : 서울대공원(경기도 과천시 대공원 광장로 102) | | |
| | 대 상 종 명 | 검은머리갈매기(Larus saundersi, II급) | | |
| | 수 량 | 17개체 | 허가기간 | 보관 : 영구 |
| | 목적·용도 | 공동 학술연구(보호 및 보전) | | |
| | 허 가 조 건 | 1. 허가 목적 이외에는 타 용도로 사용 및 분양·양도 불가함. 2. 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에서 인수 완료 후 5일 이내에 실시, 장소, 수량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(사진포함)를 우리 청으로 신고하여야 함. 3. 동 허가조건 및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. | | |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[]포획 []채취 []방사 []이식 []가공 []유통 [✓]보관 []수출 []수입 []반출 []반입 []훼손 []고사를 허가합니다.

2018년 11월 6일

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

유의사항

1.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·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.
2. 포획·채취등을 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5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3. 화약류·덧·올무·그물·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·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.
4.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.

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·채취 등 신고명세

| 일시 | 멸종위기종 | 개체수 | 포획·채취 장소 | 포획·채취 방법 | 담당자 확인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18.11.22 | 검은머리갈매기 | 16 | 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 | 공동연구를 위한 인수인계 | 이경혜 |